의안번호	제 2763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4. 4. 1.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763 호

제출연월일: 2024. 4. 1.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제외 대상 추가(안 제2조)

1) 지원 대상 확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 65세 이상 군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65세 이상 군민

2) 지원 제외 대상 추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나. 접종종류 삭제(안 제3조)

다. 지원 횟수 포함 및 제목 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2조, 제16조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3)「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4)「전자정부법」 제36조

5)「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계획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8127(2024. 2. 23.)호]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 협의

· 해당사항 없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협의 제외 대상임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4-1호

가) 예고기간: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군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액”을 “1회에 한하여 전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공동이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제1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 ---------- ---------- ---------- 군민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 ---------- ----------.
<신 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신 설>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횟수는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삭 제>
제4조(지원 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금액 및 횟수) ① --- ---------- ---------- --------- 1회에 한하여 전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생략)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공동이용----------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접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 ▶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 수집·이용 항목
-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수급자 여부

□ 이용 및 보유기간
-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접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지원대상	☐ 65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 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 ▶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 수집·이용 항목
-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용 및 보유기간
-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가. 관련 조문: 안 제2조 ~ 제4조

나. 비용발생 요인: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2) 사업규모

('24. 1. 31.기준,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기접종자[1]	기초생활수급자 접종 예상[2]	미접종자
65세 이상	17,510	3,633	590	13,287

1) 2017년 이후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현황이며, 이전 접종자 및 미등록자는 제외

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590명(백신 잔여량)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명, 천 원)

구 분	1차 연도 (2024년)	2차 연도 (2025년)	3차 연도 (2026년)	4차 연도 (2027년)	5차 연도 (2028년)	총합계 (평균)
접종(예상)인구[1]	2,700	5,600	800	800	800	10,700 (2,140명)
소요예산[2]	270,000	560,000	80,000	80,000	80,000	1,070,000

1)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폐렴 백신의 목표 접종률에 준하여 67%로 산정
- 1차년도: 13,287×20%(2023년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접종률에 준함)=2,700
- 2차년도: [13,287+1,200(신규)-2,700(1차년도 접종자)]×47%=5,600
- 기접종자수+1차년도 접종자수+ 2차년도 접종자수=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67%[(17,510+1,200(신규))×67%]
- 그 외 차수(2026년~2028년)은 해당연도 신규 65세 인구 67% 접종률을 목표로 산정함

2) 백신비용(100,000원) * 접종(예상)인구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 2028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1차 연도 (2024년)	2차 연도 (2025년)	3차 연도 (2026년)	4차 연도 (2027년)	5차 연도 (2028년)	합계
재원조달	의존재원	-	-	-	-	-	-
	자체재원	270,000	560,000	80,000	80,000	80,000	1,070,000
	기 타	-	-	-	-	-	-
	소 계	270,000	560,000	80,000	80,000	80,000	1,070,000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이 을 희

참고 **관계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21.>